

통합허가대행업 [] 등록
[] 변경등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10일
신청인	업체명(상호)	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	
	사무실 소재지		
(전화번호 :)			
신청 내용	등록 내용		
	변경등록 내용		

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1항 []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[] 후단

[] 제1항 [] 등록
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 을 신청합니다.
[] 제4항 [] 변경등록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

첨부서류	1. 등록 신청의 경우 가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4의2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나. 제1호의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.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나.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1.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사업자등록증명(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1. 본 신청서의 작성은 통합허가대행업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

2. 등록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가. 업체명
나. 대표자 성명
다. 사무실의 소재지
라. 기술인력

